

#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홍국표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의 35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  
우 영광입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출생 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른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태어난 아동의 생  
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상의 비극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태아와 아동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생명보호의 관점은 물론,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서울시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와 책무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3조에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 안 제6조에서 법률이 규정한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 이 밖에 안 제9조에서는 실질적인 위기임산부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 안 제10조에서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를 비롯하여, 신뢰성 확보 방안을 위한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위기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며, 이는 곧 서울시민 전체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 부디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감사합니다.